

사 료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축산환경자원과)

1. 개정이유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별표 8 개정)

다. 사료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추가(별표 12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아목 시설기준 중 “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를 “**또는 수분 14% 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정선 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같은 호 카목 시설기준 중 “시설을”을 “**시설(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로, “다만,”을 “**다만, 수분 14%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정선 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8제2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여야”를 “**해야**”로, “해해”를 “**해당**”으로, “그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12 제4호 비고란 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정안			
[별표3]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별표3]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구분	사료종류	시설별	시설기준	구분	사료종류	시설별	시설기준
기타	34. 남은 음식물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기타	34. 남은 음식물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제6호의 시설기준과 같음
		아. 건조·냉각 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냉각시설을 갖출 것. 다만, 습식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아. 건조·냉각 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냉각시설을 갖출 것. 다만, 습식 제조시설인 경우 또는 수분 14% 이하로 제 조된 남은음식물사료 를 구매하여 재가공 (분쇄·정선 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자. 악취제거 시설	제조 과정에서 발생 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추 것			자. 악취제거 시설	제조 과정에서 발생 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추 것
		차. 이물질 제거시설	쇠붙이·비닐·유리 등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 것			차. 이물질 제거시설	쇠붙이·비닐·유리 등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 것
		카. 가열시설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 것. 다만, 돼 지전용사료만을 제조 하는 경우에는 80℃ (심부온도기준)에서 3 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것			카. 가열시설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 (돼지전용사료만을 제 조하는 경우에는 8 0℃(심부온도기준)에 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것. 다만, 수분 14% 이하로 제조된 남은

현행	개정안																
[별표8] 자가품질검사기준 1. (생략) 2. 용기·포장의 검사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는 용기·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해 용기·포장의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별표12] 수수료 및 검사료 등 <table><tr><th>구분</th><th>금액</th><th>비고</th></tr><tr><td>4.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td><td>수입인지</td></tr></table>	구분	금액	비고	4.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수입인지	<table><tr><td></td><td></td><td></td><td>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정선 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td></tr></table> [별표8] 자가품질검사기준 1. (생략) 2. 용기·포장의 검사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는 용기·포장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용기·포장의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생략) [별표12] 수수료 및 검사료 등 <table><tr><th>구분</th><th>금액</th><th>비고</th></tr><tr><td>4.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td><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td><td>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td></tr></table>				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정선 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분	금액	비고	4.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구분	금액	비고															
4.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수입인지															
			음식물사료를 구매하여 재가공(분쇄·정선 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분	금액	비고															
4. 검사수수료, 재검사수수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연락처	(044) 201 - 2359, 2360